

보도자료

चित्रा स्पर्धण्ये ! स्पृड्डे द्रिष्ट्य पंग

보도일시 (인터넷) 2024. 10. 7.(월) 11:00, (지면) 2024. 10. 8.(화) 조간 배포 2024. 10. 7.(월) 06:00

# 어선 위치통지,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

- (횟수) 풍랑특보시 5회에서 2회 / (방법) 일정시간 간격에서 일정시간 이내

해양수산부는「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0월 8일(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 ~ 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청해왔다.

개정된「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어선에 설치된 4개의 위치발신장치(D-MF/HF, AIS, e-Nav, V-Pass)를 활용하여 위치신호가 소실되었을 경우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어선 안전여부를 선제적으로 식별 가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 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지<mark>大미브리피</mark>

####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호	(044-200-5550)
	어선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류 택	(044-200-5523)

## 참고

## 어선 위치통지 제도 합리화(요약)

구	분	현 행		개 정		
평시	일반해역	1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 통지	1회	최초 통지는 출항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24시간 이나 * 2회차 통지는 1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나 3회차 통지는 2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나 이후 동일한 방법 00시(출항시각)	
			인정 미인정 12Al		<b>인정</b> 12시 최초 통지는 특정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나	
	특정 해역	3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6시간 후 통지, 2・3번째는 이전통지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이어(출항시각) 인정 미인정 미인정 16시 인정 미인정 08시	2회	최소 봉시는 특정해역 신입 후 12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00세(전입시각) 인정 인정	
	조업 자제 해역	2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8시간 후 통지, 2번째는 이전통지와 8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2회	최초 통지는 조업자제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니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b>12시간 이</b> 니	
기상 특보 시	 풍랑 특보	평시+2회 'ex) 일반해역 3회(1+2)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23시 <sup>00시(출항시각)</sup> 이번 일요 인정 미인정 미인정 12시 11시 11시 30분(중정투보 발효)	전해역 2회	투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23시 30분 인정 인정	
	태풍 특보	평시+6회 *ex) 특정해역 9회(3+6)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전해역 6회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